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 및 설명의무에 관한 종합적 고찰^{*}

- 청주지법 2022. 12. 22. 선고 2021나55269 판결을
중심으로 -

김 형 진^{**} · 조 규 성^{***}

<차례> _____

I. 들어가며

IV. 면책사유와 설명의무에 대한 검토

II. 대상판결의 검토

V. 마치며

III. 보상요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

주제어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직무수행, 면책사유, 약관의 설명의무, 사고의
우연성, 위험의 동질성

<국문초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장기보험상품 등에 부대하여 판매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이다. 통상 1천 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매우 유용
한 보험상품이다. 이때 ‘일상생활’의 개념은 ‘평상사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이 필요한 ‘직무수행’과는 구별된다. 물론 ‘일상생활’의 범
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그 결정 과정에서는 불특정 일반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위험의 단체성과 동질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검토 판결은 평소 우울증과 편집 조현병을 앓던 피보험자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면서 때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피해자(원고)를 충격한 대상 사안이다. 제1심에서는 피보험자의 행
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우연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또는 투신의 의사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닌 매우 이례적 행위로서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

* 이 연구는 2024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주저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센터장, 법학박사(Ph. D.), 제3종 대인 및 신체손해사정사.

*** 교신저자 :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법학박사(Ph. D., 보험법 전공).

- 논문접수일(2024.05.30), 심사개시일(2024.06.26), 게재확정일(2024.06.30)

럽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보상요건인 ‘일상생활로 인한 것’과 ‘우연한 사고일 것’ 중 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일상생활이라는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피보험자의 위 행위는 보험단체의 동질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다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각 유형별로 그 취지와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는 보험사고 이후 보상책임의 면·부책 단계에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간 첨예한 다툼이 되는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결되어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측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설명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일반인의 평상시의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보험은 특히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부대하는 배상책임담보로서 월 1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료로 1억 원의 보상한도에서 일상생활 중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I. 들어가며

오늘날, 기업은 물론 개인의 민사책임이 강화되면서 각종 사고에 따른 가해자 개인의 경제적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책임보험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¹⁾ 책임보험의 발전은 복잡다단한 사회생활로 인한 위험의 태양이 다양하고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업무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환경에 기인한다.²⁾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의 신설과 소비자보호단체의 증가, 권

1) 최근에 책임보험은 자동차배상, 의료과오배상, 제조물배상, 전문직업인배상, 영업배상 등 수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법의 영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른바 현대 보험의 ‘총아(Wunderkind)’라고 불린다(장덕조, 「보험법」 (제6판), 법문사, 2023, 343면;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495면).

2)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428면. 이러한 현상은 책임보험의 중심이 피보험자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보호로 전환되고 있으며, 민사책임의 중점도 징계·예방적 기능으로부터 배상적 기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이를 “민사책임의 객관화” 경향이라고도 한다).

리의식의 강화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책임액의 규모 또한 고액화되고 있는 점도 성장요인으로 꼽힌다.³⁾ 이처럼 개인과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이 확대됨에 따른 대응책이 바로 책임보험 제도이고,⁴⁾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민영보험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이다. 상법에서는 책임보험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19조).⁵⁾

책임보험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실무상 다양한 배상책임 상품과 약관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담보위험이 개인의 일상생활상의 위험인가 또는 업무활동상의 위험인가에 따라, 기업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Personal Liability Insurance)을 들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주택 관리나 사생활 이외의 업무시설 및 업무활동에 따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반면, 개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른바 ‘facility’ 책임)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따르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른바 ‘operation’ 책임)을 담보한다. 담보위험에 따른 책임보험약관의 종류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담보위험에 따른 책임보험약관의 구분

구 분	개인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	일상생활의 위험	업무활동상의 위험
약관	일상배상책임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별약관

3)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584면. 이러한 현상은 최근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매우 강해지면서 크고 작은 분쟁을 ‘법적 책임’ 문제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한창희, 「보험법」 (개정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450면.

5)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재산보험이고, 피보험자의 전 재산 내지 책임재산에 생긴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바, 적극보험이 아니라 소극보험이다(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640면).

개인배상책임위험의 경우 현재 이를 독립적으로 담보하는 국문약관은 존재하지 않는다.⁶⁾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이하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 약한다)이라는 제목하에 장기보험 등의 손해보험상품에 부대(附帶)하는 특약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1,000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렴하다.⁷⁾

일상생활에서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지위에 있는 자는 위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개인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⁸⁾

이 논문에서는 (Ⅱ)일상배상책임특약의 피보험자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면서 그 아래를 지나가던 피해자(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대상으로, (Ⅲ)해당 특약의 보상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이어, (Ⅳ)면책사유와 약관의 설명의무 해당 여부 및 면제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1) 피고는 2010. 11. 26.경 소외 보험계약자인 A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건강보험 00건강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특약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조) 등이다. A는 피보험자 본인인 B의 자녀로 보험증권

6) 일본의 경우 ‘개인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다시 특약으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 또한 책임보험보통약관에서 일반규정을 제공하고 특별약관을 통해 이를 보충하고 있다(최병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와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기업법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76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39면).

7) 현재 판매되는 일상배상책임특약의 보상한도는 대인 및 대물사고를 포함하여 1억 원이며, 대물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20만 원(다만, 누수로 인한 대물사고 시 50만 원)이다. 해당 특약을 중복가입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면제 및 보장한도의 증액의 효과가 있으며, 보험사고로 인해 보장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8) 박세민, 「보험법」 (제7판, 박영사, 2023, 683-684면).

에 기재된 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3) A는 2020. 2. 21. 11:54경 **시 **구 소재 □□빌딩 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그 아래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사망하였다.

(4)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경부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편집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았는데,⁹⁾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모친 B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모친이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갑자기 뛰어나가 인근 빌딩 8층으로 올라갔고 외투 등을 벗어던 뒤 8층 베란다 펜스 밖으로 넘어가 약 1~2분 동안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3, 4번 늑골 골절 및 오른쪽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에 따라 상법 제724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② 피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구체적으로 2017. 4. 28.부터 동년 9. 26.까지 △△의원에서 ‘중증도우울에피소드로 치료받았고, 2020. 1. 13. ▽▽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3일 전인 2020. 2. 18.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 전에는 자해를 한 적도 있다.

2.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의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는 투신행위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하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투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으로서 해당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3. 법원의 판단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해당 약관상 망인의 “고의”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⁰⁾

가. 망인에게 투신 또는 자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투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투신하는 망인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서는 망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사흘 전인 2020. 2. 18.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도청 당한다’, ‘감옥 간다’ 등의 진술을 하였던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망인에 대해 약물 치료만 이루어졌던 점, 투신 당시 외투를 벗고 1, 2분 정도 난간에 걸

10) 청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6689 판결.

터앉아 있다가 추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소심(대상판결)의 판단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¹¹⁾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 사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서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담보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 전제로서 ‘일상생활’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가입자들로 구성된 보험단체가 가지는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이 투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빌딩 8층에 올라가 난간을 넘어 투신을 하는 행위가 일상생활 중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서 보험단체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대상판결의 의미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보험기간 중에,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③ 우연한 사고로, ④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투신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의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로 정리될 수 있다.

11)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55269 판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먼저,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¹²⁾ 따라서 ‘일상생활’의 개념 또한 일반인의 관점 및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기 시, 비상 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손해보험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손해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배상책임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는데, 이중 일상생활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모든 행위를 일상생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닌 위기 시, 비상 시, 특별한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서와 같이 망인의 자살 혹은 투신의 의사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판결이 ‘일상생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고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내용은 검토되지 않았다.¹³⁾ 그러나 망인에게

1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1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의 투신행위가 해당 약관상 ‘고의’사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이나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점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따른 면책도 함께 주장하였다. 대상판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로, 피보험자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는 의심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 주민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미리 준비한 인화성물질을 피보험자 스스로 몸에 붓고 불을 붙여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 또는 상해불평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는

투신 또는 자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투신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한다. 이에 적어도 사고 발생 자체는 ‘우연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포함하여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I. 보상요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

1. 개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첫째,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와 둘째,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공통 요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전자에 의해, 그리고 주택 외의 사고로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자에 의해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실무상으로도 많은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상책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피보험자성에 대한 검토

보험실무상 일상배상책임보험 상품으로, 그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배상책임과 가족(또는 가정)일상배상책임, 그리고 자녀(만)배상책임의 세 가

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어 ‘고의’가 인정되며, 설명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역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가단507084 판결).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와 기명피보험자의 ‘동거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위 두 명외에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역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담보상품별 피보험자의 범위

상품유형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동거배우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 중인 친족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자녀(만의) 배상책임	• 기명피보험자인 자녀 •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

각 상품의 구분 실익은 일상배상책임사고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해당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점에 있다.

먼저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행위에 한하며, 자녀의 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다.¹⁴⁾ 따라서, 설령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어 부모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

14) 이러한 점에서 다른 특약과 구분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부부·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제한하여 명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¹⁵⁾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거나 ‘자녀’ 일상배상책임을 통해 자녀가 그러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법정감독의무자로서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게 된다.¹⁶⁾

한편, 상대적으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의 의미에 대해 보험실무상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본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그 생활자금에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산 및 생활자금을 달리하여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상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¹⁷⁾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¹⁸⁾

대상 판결에서도 망인 A는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인 B의 자녀로 사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당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83534 판결에 의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모친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한 자녀(만14세)가 부주의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이올린을 파손시킨 사고에서 해당 자녀는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친의 법정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담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같은 의견으로, 인천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나2576 판결 참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119592 판결 참조.

17)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69 판결 등.

18) 소송실무상 생활비 지원 관련 금융거래정보(그 증명자료로 금융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는 건강보험상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2016. 7. 26. 선고 2014가단115163 판결). 이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모친이 2013. 12. 5. 자녀의 집에 방문하여 일으킨 화재사고에서 모친을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① 피보험자가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금융거래정보 등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부부에 대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나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과세증명서는 피고 부부의 소득 유무 및 재산 소유 유무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 점, ③ 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 결과 피고 부부는 2012. 4. 30. 피보험자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를 상실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11. 11.에서야 다시 직장피부양자가 된 사실, ④ 피보험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피고 부부를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모친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사고의 우연성과 위험의 동질성

여기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언급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위험의 단체성 및 동질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사고의 우연성

‘우연성’의 의미에 관하여 상해보험에서는 상해의 개념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에서의 ‘우연성’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 시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의 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에서의 우연성을 다르게 파악하는 견해(제1설),¹⁹⁾ 일반보험에서의 우연성의 개념을 예견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보다 넓게 파악하는 견해(제2설),²⁰⁾ 우연성의 개념을 인위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제3설)²¹⁾ 등이 제시되고 있다. 판례는 화재보험약관에서 우연성의 개념을 인위적인 의미에서의 ‘비인위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반복된다고 하여,²²⁾ 제3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각건대, 손해보험 분야든 인보험 분야든 우연성이 가지는 의미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우연성의 개념을 인위적 사고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인위적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험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이고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도

19) 최윤성,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583면.

20) 김성태, 앞의 책, 863면.

21) 장덕조, 앞의 책, 14면; 김은경,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금융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91면.

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참조.

포함된다.²³⁾

한편, 이때의 고의가 사고의 원인행위(보험사고의 발생)외에도 결과의 발생(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필요한지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만 고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말할 때 그 우연이란 사고 발생 또는 그 시작의 우연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고의는 원인행위 즉 사고의 발생이나 사고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²⁴⁾ 그렇게 해석해야만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보험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²⁵⁾ 결과의 발생을 떠나 사고 자체를 인위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보험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험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결과의 발생에까지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면 고의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²⁶⁾ 이에 따르면 원인행위에만 존재하는 고의는 상법 제659조의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서 고의는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서는 그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행위한 경우(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비로소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²⁷⁾

2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등.

24) 박세민, 앞의 책, 323면

25)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142면; 김성태, 앞의 책, 269면에서도 “고의는 원인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면 족하고 결과에 관하여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관련 판결로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나25751 판결에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26) 한기정, 앞의 책, 305면.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보험금 취득을 의욕했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27) 장덕조, 앞의 책, 171면. 주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르면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생각건대,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면책약관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원칙인 점, 피보험자가 중대한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호 등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고의는 사고의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²⁸⁾

(2) 위험의 단체성과 동질성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보험계약관계는 동일한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그중의 한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그 구성원이 공동하여 충족시킨다는 이른바 위험단체적 성질을 가진다. 이를 위험의 ‘단체성’이라고 하며, 각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²⁹⁾

영리보험은 법률적으로 개별적인 채권계약의 형식을 취하므로 단체성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단체성’이라는 경제적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³¹⁾

개별적인 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등가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

판결, 대법원 2020. 7.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등).

28) 이와 관련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과 관련된 사례로, 피보험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류 회사 세금감면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는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29) 양승규, 앞의 책, 55면.

30) 상법상 이를 반영한 규정으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상법 제653조) 등이 있다.

31)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앞의 책, 16면.

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단체의 개념과 그 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의 총액에 등가성의 원리 및 수지상등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기초로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성이 구현될 수 있다.³²⁾ 결국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험단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³³⁾

한편,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구성원들의 위험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의 요건으로서 다수의 동질위험의 결합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험의 ‘동질성’이라고 한다. 동질위험의 결합만이 매 사고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인가에 대한 통계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개연율의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³⁴⁾ 이것은 다시 위험의 단체성과도 연결된다. 위험의 동질성을 통해 위험단체가 구성되고 이 안에서 위험이 전가되며 분산되는 역할이 이루어지며,³⁵⁾ 이를 통해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화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결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하여 법원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의식적으로 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우연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³⁶⁾

대상 판결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투신으로 피보험자가 원고와 부딪쳐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32)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제공금지나 동법 제140조의 보험계약의 포괄적 이전의 허용,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중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 등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의 단체적 성격이 채권 계약으로서의 개별적 특성과의 조화 문제 및 보험계약자와 보험단체의 이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김은경, 앞의 책, 46면).

33) 보험계약의 단체적 성질은 보험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 중 하나로서 각종 보험제도의 성립이나 운영, 보험계약법 또는 약관의 해석,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박세민,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개별성 원리의 조화 문제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93집 ‘12-12, 한국보험학회, 2012, 35면).

34)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앞의 책, 63면.

35) 박세민, 앞의 책, 4-5면.

36)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자신의 투신으로 인하여 그 아래 추락지점을 보행하던 원고와 부딪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하여 담당경찰서의 내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사고장소인 □□빌딩 8층 난간으로 이동하여 외투 등을 벗어둔 뒤 난간 바깥 펜스로 넘어가 약 1~2분 정도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투신하였다”는 것이고,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사진을 의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난간에 걸터앉기 바로 직전과 걸터앉아 있는 몸의 형태나 자세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시선이 건물 밖 아래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 투신 전 빌딩 8층 난간에 걸터 앉아 1~2분 정도 시간이 흐르는 사이 빌딩 출입구를 향해 보행하던 원고를 포함한 행인들을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보험자로서는 자신의 투신으로 인하여 그 아래 추락지점을 보행하던 원고와 부딪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의 투신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행위이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상 사안과 같이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는 불특정 일반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위험의 단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핵심인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고 또한 동일한 위험하에 있는 보험단체의 동질성을 깨트리게 된다.

4. “일상생활”의 개념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서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하면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담보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특약의 면책사유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피보험자의 ‘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³⁷⁾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상시 활동 즉, 일상생활 중의 사고의 위험과는 그 발생가능성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³⁸⁾

결국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상생활’ 또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의 면·부책이 갈리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실제 판결례를 통해 양자의 개념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1) “일상생활”이라고 본 사례

가. 서울중앙지법 2022. 12. 6. 선고 2021가단5209488 판결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08:30경 주점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 불에 냄비를 올려놓은 후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옆 화구 프라이팬에 담겨진 식용유에 착화, 발화되어 해당 점포가 소훼된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근무시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후 자리를 비움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법 2016. 5. 19. 선고 2015나52021 판결

피보험자의 친구인 식당 사장이 부친상을 당해 식당을 상당 기간 비우게 되자 근처에 살고 있던 피보험자에게 순대국 육수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씩 육수를 끓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보험자가 육수를 끓이던 중 가스버너 불꽃이 식당에 옮겨 붙어 음식점이 전소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육수를 끓이던 중 화재사고 발생한 점,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육수를 끓인 행위가 식당 사업주의 직무수행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직무수행으로 당연히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73499 판결 참조

3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2. 11. 27. 결정 제2012-27호

다. 서울중앙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49768 판결

슈퍼마켓 직원인 피보험자가 휴식 중에 건물 뒷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를 손가락으로 튕겨 그 불씨가 남아 있는 담뱃재를 털었는데 그 불티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슈퍼마켓이 전소된 사고에서, 근무 중 휴식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출퇴근 중 일어나는 일과 같이 직무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상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제한한다면, 대부분의 일상을 직무와 관련되어 보내는 현대인들로서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여서 이는 보험의 기본 취지 및 약관해석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2. 11. 27. 결정 제2012-27호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피보험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묘지정리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건드린 비석이 넘어지면서 같이 일하던 인부가 부상을 입은 사고다.³⁹⁾ 이 건 사고를 평상시가 아닌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직무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피보험자의 경우 대리운전 외에 묘지정리 또는 이와 유사한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 건 사고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2) “직무수행”이라고 본 사례

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73499 판결

피보험자는 4층 건물 소유자로서 4층(401호)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다가구 주택인 2층 및 3층은 주거용으로, 1층 및 지하 1층은 소매점 및 공장에 임대하던 중 건물 지상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면서 지하 1층 임차인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부동산 임대가 피보험자의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이 사건

39) 피보험자는 대리운전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로 그 외 다른 생계유지 활동은 없었고, 이 건 묘지정리 대가로서 수고비(술값)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 지하1층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면서 월 관리비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피보험자가 그 임대차목적물인 지하 1층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피보험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⁴⁰⁾

나. 서울중앙지법 2018. 1. 23. 선고 2016가단5276255 판결

피보험자는 ‘○○수리센터’라는 상호로 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이 운영하는 점포창고의 수리를 부탁받은 후 전기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었고 그 당일 자신이 부탁받았던 창고의 수리현황을 보려고 현장을 들어갔다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용접을 수행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평소 전기용접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았거나 위 수리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피보험자가 수행한 위 용접작업은 자신의 직업에 기하여 행한 사무로서 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의정부지법 2017. 9. 20. 선고 2016가단123778 판결

파지 등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피보험자가 그 소유 비닐하우스 앞에 있는 파지 야적장에서 그날 수집한 파지 등의 정리작업을 하다가 추운 날씨에 곱은 손을 녹이기 위해 드럼통에 나무의자 등 가연물을 넣고 불을 피우던 중 불씨가 옆 풀밭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서, 피보험자는 폐지수집용 화물차를 운용하고 수집한 폐지, 비닐, 박스, 고철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야적할 수 있는 전용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는 사실로, 이 사건 화재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무, 즉 수집한 파지의 정리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법 2021. 5. 25. 선고 2020나1720 판결

피보험자는 지역 내 사설단체에 속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복구활동의 일환으로 수목절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수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40) 다만, 피보험자가 위 주차장 침수정 및 그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결과 이물질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발생한 침수사고는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접해 있던 통신주와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서, 위 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연재난과 관련된 것들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작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하여 행하는 활동인 점, 수목 절단 작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작업의 내용, 작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하던 수목 절단작업이 피보험자의 주된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⁴¹⁾

(3) 소결

이상의 판결례를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은 ‘평상시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⁴²⁾ 여기서 ‘평상 시’는 위기 시, 비상 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하는 개념인 반면,⁴³⁾ ‘직무’의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⁴⁾

나아가 ‘직무’에 해당하는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 주체가 조직되어 있고(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사업주체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 사업 주체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⁴⁵⁾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조항은, 단순히 피보험자의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자체 또는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

41) 일본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피보험자는 某신사(神社)의 봉사활동단체 회원으로 신사 정내에서 지상 5m의 산벚나무에 올라 전동공구(전기톱)를 사용하여 시든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다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다른 회원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활동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東京地方裁判所 令和3年6月22日判決, 令和2年(7)第13596号).

42) 위 東京地方裁判所 判決에서도 ‘일상생활’의 정의에 대해 “날마다 반복되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43)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6169 판결 참조.

4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2. 11. 27. 결정 제2012-27호 참조.

45) 이때 그 직무에는 반드시 보수 또는 대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위 東京地方裁判所 判決).

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해석하여야 할 것이다.⁴⁶⁾

그런데 양자의 해석상 문제로, 피보험자의 모든 생활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생활과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이분법적으로 양분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즉 피보험자가 일으킨 우연한 사고가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이른바 ‘중간지대(Grayzone)’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평상시”의 활동인지 또는 일상생활 중의 행위와 위험성이 달리 평가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특약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사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음식점 건물 뒤편 공터에 큰 철창을 설치하여 그 안에 기르는 개 외에도 철창 옆으로 진돗개 한 마리를 더 묶어서 키우고 있었는데, 식사를 마친 손님이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철창 안에 있던 개를 만지고 돌아서던 중 철창 밖에 묶여 있던 진돗개에게 손을 물린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담보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있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개를 기르다가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개를 키우던 장소가 음식점 부지라는 점만으로 이를 직무수행 내지 업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피보험자의 통상 일상생활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⁴⁷⁾

IV. 면책사유와 설명의무에 대한 검토

1.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면책사유의 존재 의의는 대수의 법칙 적용과 위험의 분산 등 보험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보험단체의 균형과 형평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의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52094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나22967·43209 판결 참조.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2018나76745 판결.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식당 건물 및 그 부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과 일상배상책임 모두에 의해 보상되는 보험사고로, 상법 제672조에 따라 양자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81631 판결. 이 사건 사고 또한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키우던 대형 진돗개가 펜션 방문객을 문 사안이였다).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해석과 적용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소송실무상 특히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발한다.⁴⁹⁾

면책사유는 크게 상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면책사유와 당사자가 정한 약정면책사유로 구분된다. 법정면책사유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등과 같이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제1유형)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위험 즉, 그 위험의 빈도와 심도가 심각한 경우(제2유형)⁵⁰⁾로 분류할 수 있다.⁵¹⁾

‘약정면책사유’는 위 ‘법정면책사유’의 유형을 포함하여, 개별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각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시, 개별 상품의 특성상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제3유형)와 위험의 성질상 해당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이나 제도에서 담보하는 것이 타당한 사고(제4유형)⁵²⁾로 나눌 수 있다.

48) 박세민, 앞의 책, 312면.

49) 한창희, 앞의 책, 293면.

50)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참조).

51) 한편,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사고의 성질상 보험보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책임면제사유(즉, 면책사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담보(위험)배제사유’라고 부르기도 한다(양승규, 앞의 책, 139면; 김성태, 앞의 책, 265면에서는 ‘부담보위험’이라고 한다). 담보배제사유란 사고의 특성상 애초에 보험의 담보위험 범주에 편입되지 않아 보험자의 면부책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고를 말한다. 최근 들어 면책사유에 관한 책임면제사유(Exception) 및 담보배제사유(Exclusion)의 개념(구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교과서로는 박세민, 앞의 책, 314-319면; 한기정, 앞의 책, 298-302면; 유주선, 「보험법」 (최신개정판), 씨아이알, 2018, 125면;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357면 등. 관련 논문으로는 양진태,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배제사유 구별론 - 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2, 53-67면; 김형진 서고은,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 책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82-84면 등 참조).

52) 예컨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한 것이다. 비슷한 취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그에 따른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상배상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을 근거로 일반적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조항 규정

순번	면책사유	유형
(1)	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	제1
(2)	전쟁 위험	제2
(3)	지진 등 천재지변	제2
(4)	핵·방사능 위험	제2
(5)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중 사고	제3
(6)	보험증권 기재주택 외의 기타 부동산 사고	제3
(7)	동일세대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⁵³⁾	제1 또는 제3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⁵⁴⁾	제3
(9)	계약상 가중책임 손해 ⁵⁵⁾	제3
(10)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⁵⁶⁾	제1
(1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⁵⁷⁾	제1
(1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인명 피해사고 ⁵⁸⁾	제4
(13)	항공기, 선박 ⁵⁹⁾ , 차량 ⁶⁰⁾ 등 교통수용구 및 총기 사고	제4
(14)	주택의 수리, 개축, 신축, 철거 공사 ⁶¹⁾	제2

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면책사유’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담보배제사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3)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참조).

54)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상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된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4378 판결 참조).
- 55) 계약상 가중책임은 당사자 간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위험 측정과 보험료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단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 5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입차 사용하거나 보호(Care)-관리(Custody)-통제(Control)하는 재물손해에 대해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이른바 "3C" 면책약관은,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23176 판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 57) 폭력행위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보험이 예정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만,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폭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법」의 규정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9. 10. 27. 결정 제2009-85호 참조). 예컨대,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장난 등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첨예한바, 보험실무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면부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58) 해당 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2. 11. 27. 결정 제2012-27호 참조).
- 59)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피보험자가 상대방에서 오던 바나나보트를 충돌하여 바나나보트에 탑승한 자를 사망케 한 사고에서 취미생활 중의 사고 역시 일상생활 중의 사고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는 '선박'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나14367 판결).
- 60) 여기에는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및 같은 조 제19호 나목 참조). 한편,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해당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의 사용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보험자 '자신의 차량의 사용'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보험자는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 발생 당시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량의 사용'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137348 판결). 또한 이때의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는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또는 관리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실무상 자주 분쟁이 되는 사안으로, 주차장에서 피보험자 차량의 출차 또는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

2. 면책사유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상법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⁶²⁾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³⁾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 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⁶⁴⁾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시 그 효과로, 계약취소권을 규정한 상법 규정과 계약편입배제를 규정한 약관규제법과의 관계에서 상법단독적용설과 중첩적용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동의무 위반 시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약관규제법 규정에 의해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 일관되게 중첩적용설의 입장에 있다.⁶⁵⁾

차된 다른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상배상책임특약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 61)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가할 경우 시설의 변형 및 파손으로 인해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담보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면책사유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32599 판결). 반면, 공사 중이라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유지, 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단5133208 판결).
- 62)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약관의 내용을 전달하여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의 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김은경, 앞의 책, 167면;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참조).
- 63) 이를 근거로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1. 3. 25.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서도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설명의무에 관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내지 제4호는 삭제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위반의 효과로는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6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그런데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필수불가결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상법이나 약관규제법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송실무에서 많은 다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이후 보상책임에 관한 면·부책 단계에서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⁶⁶⁾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공격·방어방법이고 오히려 보험약관의 내용을 아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⁶⁷⁾

설명 의무가 약관의 편입통제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성과 함께 법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또한 사안별 다양한 해석기법을 통해 약관의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과 그 ‘면제사유’를 유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⁶⁸⁾

‘중요한 내용’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사항,⁶⁹⁾ 혹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⁷⁰⁾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즉, 어떤 내용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

6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66) 중첩적용설에 입각한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일견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읽지 않고 또한 설명을 듣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 한국상사법학회, 2013, 87면).

67) 장덕조, “합리적 기대원칙과 보험약관의 본질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27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249면.

68) 김윤중,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사법(JURIS)」 제61호, 사법발전재단, 2022, 43면.

6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이를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자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7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⁷¹⁾

판례나 관련 법령에서는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자의 의무 및 위반 시 효과 등을 들고 있다.⁷²⁾ 일상배상책임특약의 면책조항 또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⁷³⁾

한편, 판례는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유형도 함께 제시한다. 즉,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⁷⁴⁾ ②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그리고 ③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와 ④ 그 내용의 자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등이 그것이다.⁷⁵⁾

그런데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판례는 “차량, 선박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상책임”⁷⁶⁾ 또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면책약관⁷⁷⁾ 등의 경우 그 의미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설명의무 대상이라

7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78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72) 구보험업법의 대체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보장의 범위, 보장 기간’ 등을 설명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

73)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로,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에서 그 폭행이 간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도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74) 설명의무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인식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까지 굳이 설명의무를 통해 그 가능성을 더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소은,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홍익대학교, 2019, 95면.

75) ③과 ④의 내용은 판례에서 실시한 설명의무의 인정 취지 및 ‘중요한 내용’의 반대해석으로 도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507802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나14367 판결.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5059951 판결.

고 보았다. 그 외 일상배상책임특약 특유의 면책사유들도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험사고가 면책사유를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이 이미 해당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약관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⁷⁸⁾

보험실무상 그 증명의 사항 및 정도로는, 약관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당해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사실 외에,⁷⁹⁾ 더 나아가 상품의 특성이나 보험가입자의 이해도⁸⁰⁾, 모집자의 설명능력과 모집 당시의 상황⁸¹⁾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인식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⁸²⁾

3. “일상생활” 개념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배상책임특약의 면책사유는 대체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표적 보상요건인 ‘일상생활’의 개념

7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등.

79) 물론,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 계약체결 후 보험회사 직원과 약관조항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확인·통화한 사실 등으로 그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46528 판결). 그러나 최근의 대체적인 판례의 경향은 이를 절대적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위 자필서명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사실상의 추정력 외에 법률상의 추정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 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60면)와 고객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된 기명과 서명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김선정,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의 이행 주체”,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1호, 생명보험협회, 2014, 44면).

80)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학력, 직업 또는 당해 보험계약 이전 가입 경험, 당해 보험의 가입 경위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81) 해당 모집인의 경력이나 상벌 사항,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중요사항 설명과 관련된 모집 당시의 상황 등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82)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의무내용이 유력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례가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일상생활’의 대칭점에 있는 면책사유인 ‘직무수행’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와도 연결된다.

과거 판례에서는, 해당 약관에 ‘일상생활’의 개념을 정의한 바 없고 그 개념 또한 불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⁸³⁾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보상요건인 ‘일상생활’과 면책조항상 ‘직무’ 개념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들이 점차 눈에 띄고 있다. 그 근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일상생활’의 의미를 사전적(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어의(語義)에서 찾는 견해로,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고, 이는 직업 유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면책약관상 ‘일상생활’이라는 문구 자체로 명백한 바를 확인적 의미로 부연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 그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⁸⁴⁾

둘째,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 제목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특약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면책조항상 ‘직무’의 개념 또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거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⁸⁵⁾

셋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책임 발생 시”라고 보장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설명이 없더라도 ‘직무수행’ 중의 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사고는 용어 자체로써 서로 개념상 대척점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직무상의 위험이 배제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배

83)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6169 판결 참조.

84)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123778 판결.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17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58962 판결.

상을 구하는 것은 해당 특약의 존재 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⁸⁶⁾

앞서 언급한 설명의무 면제사유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⁸⁷⁾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통용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약관조항의 내용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인지(객관성·非의외성)와 특정 고객의 입장에서 약관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는지(주관성·개별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된다.⁸⁸⁾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의 의미 또한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서 일상생활 중의 행위와 위험성이 달리 평가되는 ‘직무수행’과는 명확히 구분되는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또한 ‘직업·직무’는 다종다양함으로 특징으로 하는 반면, ‘일상생활’은 무차별성을 빠질 수 없는 개념요소로 하므로 직업 또는 직무 관련 활동이 개념적으로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의도 다를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장기보험상품에 부대하는 특약으로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월 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범위·금액에 비해 매우 소액이고,⁸⁹⁾ 해당 특약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사회통념상 그 내용의 자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결국,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별도로 설명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5242376 판결.

87)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른바 ‘의외조항’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설명의무를 통한 불공정성의 규제의 필요성은 낮아진다(이소은, 앞의 논문, 96면).

88) 김윤중, 앞의 논문, 55면; 이소은, 위의 논문, 103면.

89)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지만(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 43342·43359 판결 참조), 장기손해상품에 부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일상생활’이 설명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쟁점과는 판단의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V. 마치며

보험사고를 중심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우연한 사고일 것,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할 것, ③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상책임이 갈리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의식적으로 한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는 우연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서는 그로 인해 타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즉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는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불특정 일반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위험의 단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정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배상책임보험 상품(특약)이다. 이때 ‘일상생활’은 ‘평상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직업·직무’와 구분된다. 물론 피보험자의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으로 명확히 양분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평상시의 일상생활’ 중의 행위인지 또는 그와 위험성이 달리 평가되는 행위로서 생계유지를 위하거나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이 요구되는 활동인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특약의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것이지만, 적어도 그 결정 과정에서 보험단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등과 같이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와 천재지변과 같은 비정상적인 위험 외에, 보험증권 기재 외 주택이나 일상생활 외의 사고 등 당해 보험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 및 자동차사고나 업무 중 사고와 같이 다른 보험이나 제도에 담보하는 것이 타당한 사고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유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대부분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또한 대체로 설명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상요건인 ‘일상생활’의 개념이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와 달리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상생활’의 의미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평상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개념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의 의미는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서 일상생활 중의 행위와 위험성이 달리 평가되는 ‘직무수행’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더욱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부대하는 특약으로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점, 월 보험료가 통상 1천 원 미만으로 보험가입금액(1억 원)에 비해 매우 소액인 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위험을 담보하는 매우 유용한 개인보험이라는 점 등으로 사회통념상 그 내용의 자부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결국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일상생활’의 개념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별도로 설명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험실무상 쟁점이 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 및 설명의무에 대해 부족한 내용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현대의 복잡다단한 일상생활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효용성 높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박세민, 「보험법」 (제6판), 박영사, 2021.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유주선, 「보험법」 (최신개정판), 씨아이알,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준교·정찬목,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 장덕조, 「보험법」 (제6판), 법문사, 2023.
- 한기정,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21.
- 한창희, 「보험법」 (개정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2) 논문

- 김선경,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义务的 이행 주체”,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1호, 생명보험협회, 2014.
- 김윤중,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사법(JURIS)」 제61호, 사법발전재단, 2022.
- 김은경, “상해보험에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금융법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상사판례연구」 제26집 제1권, 한국상사법학회, 2013.
- 김형진·서고은, “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 책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 박세민, “보험계약 및 약관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개별성 원리의 조화 문제에

-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93집 '12-12, 한국보험학회, 2012.
- _____,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 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 양진태,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배제사유 구별론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보험법학회, 2022.
- 이소은, “약관 중요내용의 설명의무와 그 면제사유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홍익대학교, 2019.
- 장덕조, “합리적 기대원칙과 보험약관의 본질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27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 최병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와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기업법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76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 최윤성,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연구」 제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Abstract>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Compensation Requirements and Explanation
Obligations of the Special Agreement on Liability
for Daily Life Insurance
- Focusing on the 2021na55269 judgment of the Cheongju
District Court on December 22, 2022 -**

Kim, Hyung Jin* · Cho, Gyu Seong**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s a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sold in the form of a special agreement in addition to long-term insurance products. It is a very useful insurance product that covers damages due to general activities that can occur widely in everyday life with an inexpensive insurance premium of less than 1,000 won. At this time, the concept of 'daily life' means life in 'normal times', and is distinguished from 'job performance' that is for 'maintaining a living' or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Of course, the scope of 'daily life'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specific circumstances, but at least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it, the group performance and homogeneity of the risk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general policyholders should not be impaired.

In the case where the insured, who usually suffered from depression and paranoid schizophrenia, jumped from a high-rise building and shocked the victim (plaintiff), who just happened to pass under it, the damage caused by the insured's actions was judged as an accidental accident in the first trial. However,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judged that the act of the insured jumping out of the building with the intention of suicide or jumping off was not the "general act that may occur in everyday life" mentioned above, but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Konkuk University Ph. D.

** Doctor of Law, Professor, Dept. of Finance & Insurance, HyupSung University.

was difficult to regard as being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aily life". The target judgmen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considering that it did not meet the former requirements among the usual life and accidental accident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mpensation requirements of the daily life 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e insured's above actions outside the certain boundaries of daily life are very valid in that they harm the homogeneity of insurance groups.

Furthermore, in this paper, an analysis is conduct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concepts of 'daily life' and 'job performance'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daily life liability through various lower court rulings, and the purpose and meaning of a number of reasons for indemnification are considered for each type. The results of this review are link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sharp disput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the stage of exemption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after an insurance accident.

Most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Special Agreement on Daily Liability for Compensation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as it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 a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conclude a contrac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explain it. However, 'daily life' is a concept accepted by social norms as a daily activity of the general public. Even if the insurer does not explain separate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sured can fully predict or understand the contents and is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Agreement on Daily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ich is a liability guarantee incidental to long-term non-life insurance products, guarantees various risks in daily life with an insurance premium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per month.

Key Words : Daily life liability special agreement, daily life, job performance, reasons for exemption,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accident coincidence, homogeneity of risks